



내 용 증 명 에 대 한 답 변 서

수신인 : 키인수학전문학원 대표 이예림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330, 4,5층

발신인 : 변향희
노원구 월계로 45가길 94

제 목: 귀하가 발송한 2026. 4. 14.자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위 발신인은 수신인이 2026. 4. 14.자로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과 법률적 근거에 기반하여 회신합니다.

1. 본 계약의 법적 성격 및 발신인의 근로자 지위

가. 계약의 명칭과 실질의 불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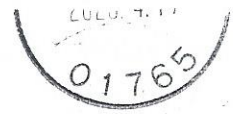
발신인과 수신인이 2025. 8. 12. 체결한 ‘강의용역 위탁 계약서’ (이하 ‘본건 계약’)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수신인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발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

관련하여 대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②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③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⑦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2005두13025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다. 본 사안의 구체적 검토



1)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및 업무 내용의 결정

수신인은 본건 계약 제13조(수업 및 업무에 관한 사항)를 통해 수업시간 준수, 수업준비, 수업 중 이탈 금지, 학부모 상담, 회의 참여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사실상 복무규정으로 기능하

게 하였습니다.

또한, 발신인은 수신인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수신인이 정한 시간표에 따라 강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정기적인 회의에 참석하고 수시로 업무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아가 동료 교사 조병훈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수신인 학원의 대표는 수업 중 교사의 화장실 이용을 지적하고, 상담 및 운영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등 구체적이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한바, 이는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다수의 판례와 그 궤를 같이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28. 선고 2023가단 5421268 판결 등).

2)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그리고 본건 계약 제6조는 평일 및 토요일의 용역 제공 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발신인이 수신인이 지정한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었음을 분명히 기재하고 있는바, 발신인이 임의로 근무 시간을 변경하거나 강의 장소를 선택할 수 없었다는 점은 종속적 노무 제공의 핵심적인 징표 중 하나입니다.

3) 계약서 자체의 근로계약 인정

결정적으로, 본건 계약 제14조 제1항은 “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스스로를 ‘근로계약서’로 칭하고 ‘근로기준법’의 준용을 명시한 것은, 수신인 스스로 본 계약의 법적 성격이 근로계약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서증입니다.

2. 수신인의 부당한 요구 및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반박

가. 위약벌 조항(계약서 제9조 제1항)의 무효

본건 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계약서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1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시 위약별로 일금 10,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은 명백히 무효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신인의 위약벌 청구는 법률상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설령 본건 계약을 민사상 계약의 경우더라도 해당 위약벌 조항은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민법 제103조에 따라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나. ‘무단 퇴사’ 주장에 대한 반박

01765

수신인은 발신인이 ‘무단 퇴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분명히 다르며 허위사실에 근거한 부당한 주장 개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여 드립니다.

1) 건강 악화 및 지속적인 퇴사 의사 표명

발신인은 입사 초기부터 과도한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2025. 9. 23.경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정신병적 증상 없는 중증 우울 삽화’ 진단을 받았고(증 제3호증), 2025. 10. 17.에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구역감으로 응급실 진료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증 제4호증).

발신인은 이러한 건강상의 문제로 2025년 12월 중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오히려 수신인 측의 만류가 있었습니다.

이는 일방적인 무단 퇴사가 아니라, 건강 악화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퇴사 절차를 밟으려 했음을 증명하는 사정입니다.

2) 성실한 인수인계 노력

또한 발신인은 퇴사 직후, 학급 진도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후임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전달하였고, 동료 교사에게 수업 내용 및 온라인 시스템 계정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인수인계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였던바, 수신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인수인계 의무 불이행’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26. 4. 17
01765

다. 손해배상 주장 및 인과관계 부존재

수신인은 발신인의 퇴사로 인해 학생 퇴원, 신규 등록 감소 등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역시도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합니다.

1) 학생 수 감소 등 경제적 손실 주장의 허구성

수신인 학원의 2026년 키인수학 반명단(증 제1호증) 기재에 의하면, 발신인의 퇴사 이후에도 일부 퇴원생이 발생하였으나 신입생 유입 및 재등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전체 재원생 수는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았음이 확인됩니다.

이는 발신인의 퇴사와 학원의 경제적 손실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도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2) 퇴사와 손해 발생 간 인과관계 부재

그리고 수신인은 발신인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 어떠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막연히 학원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운영 혼란이 발생하였다는 추상적인 주장은 법률상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3. 결 어

사정이 이와 같다면 본건 계약은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는 위약벌 조항은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발신인은 무단 퇴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수신인이 주장하는 손해 역시 그 실체가 불분명하고 발신인의 퇴사와 어떠한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신인은 수신인이 2026. 4. 14.자 내용증명을 통해 요구한 위약벌 지급, 방문 사과, 추가 인수인계 등의 모든 요구를 거부합니다.

만일 수신인이 부당한 법적 조치를 강행할 경우, 발신인 역시 본 계약이 근로계약임을 전제로 미지급된 법정 수당, 퇴직금 등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수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나아가 무효인 조항에 기한 지속적인 금전 요구의 경우 형법상 공갈(미수)죄의 혐의까지 강하게 묻는 등 모든 가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엄중히 통지하는 바입니다.



입 증 자 료

- | | |
|-----------|-------------------------|
| 1. 증 제1호증 | 2026년 키인수학 반명단_20260330 |
| 1. 증 제2호증 | 사실확인서 (작성자 조병훈) |
| 1. 증 제3호증 | 의무기록지 (정신건강의학과) |
| 1. 증 제4호증 | 의무기록지 (응급실) |
| 1. 증 제5호증 | 강의용역계약서 |

2026. 4. 17.

발 신 인

변 향 희



01763

증제 호증

42PE

15	29
----	----

사실확인서

성명 : 조병훈

생년월일 : 1992. 9. 13.

연락처 : 010-8432-2858

본인은 아래 기재 내용이 본인이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들은 내용 및 현재의 기억에 기초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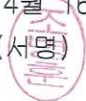
[사실 내용]

1. 2025년 8월 말 입사 직후, 본인은 부교재 작업을 진행하였고 해당 작업이 새벽 1시 경까지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2. 2025년 9월경, 대표는 수업 중 교사의 화장실 이용에 대해 지적하였고, 수업 도중 강의실에 들어와 수업 자료(오답노트 등)를 확인하였습니다.
3. 2025년 9월 말경, 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지속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4. 2025년 10월 중순경 중간고사 이후, 중학교 2학년 대상 수업과 관련하여 중3-1 과정 내용을 약 1개월 내 완료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이 난이도와 기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5. 같은 시기, 본인은 대표와의 대화 과정에서 대표로부터 “예의가 없다”, “씩수가 노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6. 2025년 11월 말부터 12월 초경까지, 상담 과정에서 대표가 원장에 대한 불만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7. 2026년 1월 말경 회의에서 공강 시간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와 원장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8. 2026년 2월 초 이후 원장이 출근하지 않아 부재 상태가 이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9. 원장 부재 이후 대표가 상담 및 운영 전반을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본 확인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일 : 2026년 4월 16일

작성자 : 조병훈 (서명)



증
제
2
호
증

외래재진기록

등록번호 : 00603085

환자명 : 변향희

작성일 : 2025-09-23

작성자 : 김의중

병동/병실 : 외래

생년월일 : 820818-2(43/F)

진료과 : 정신건강의학과

작성일 2025-09-23 (날짜)

S & O

바쁘다.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숨이 안쉬어지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쥐어 짜듯이 아프다. 10-40초

하루 3-4번

쉬는 날이 없다.

하루 9시간 근무

잠은 약 먹고 자면 7-8시간

하기 싫어 억지로 하는 것.

눈물

원장 부담

공동 대표가 말을 화내듯이 세계 이야기

A & P

a. stationary

정신치료 2

p> ditto * 21d

zopista 2mg * 21d

alpram 0.5t, indenol 10 tid 추가

진단명

구분	진단명	비고
주상병	Severe depressive episode without psychotic symptoms	

작성자 김의중

01765

증제3호증

응급실 퇴실 기록지

등록번호 : 00603085
작성일 : 2025-10-17

환자명 : 변항희
작성자 : 이준호

병동/병실 : 응급

생년월일 : 820818-2(43/F)
진료과 : 응급의학과

현병력

#자궁내막증
#MDD

상기 환자 상기 과거력 지닌 분으로 내원전일 발생한 구역감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
환자 내원전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전부터 두통과 구역감 증상있었다고 함.
머리가 양측두가 지끈거리는 양상이라고 함.
경고 보았으나 증상 호전 없어 응급실 내원함.

P/Ex>

Soft and flat abdomen

Abd Td/rTd(-/-)

Murphy -

Rovsing -

CVAT -/-

치료 및 경과

inj.후 증상 호전양상.

headache에 대하여 전문진료 보신 적 없다고 하시어 추가 w/u 위하여 NR opd f/u 권유드림.

gastritis or GERD 동반된 것으로 보임.

환자 귀가 위하여 주의사항 설명 후 귀가.

진단명

구분	진단명	비고
부상병	Gastritis, unspecified	
주상병	Headache	

작성자 이준호

2025. 9. 17

01765

증제 4호증

강의용역 위탁 계약서

키인수학전문학원 (이하 “갑”이라 함)과 변항희 (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강의용역 위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갑”이 “을”에게 독립된 자격에서 강의 용역을 제공해 줄 것을 위탁하고, “을”이 위 용역을 수행하여, “갑”과 “을”이 지속적으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학원의 유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로’는 “갑”이 “을”에게 강의용역위탁에 대한 위임보수로 지급되는 기본보수, 연장보수, 야간보수, 휴일보수 및 휴가보수 등의 정액보수와 퇴직보수 등을 포함한 일체의 용역대가를 의미한다.
2. ‘기본보수’는 “을”의 강의로 책정의 기본단위 개념으로 강의 및 강의에 부수되는 적용 단위시간을 월 평균 209시간(주 평균 40시간)에 해당하는 금품으로 책정하여 지급하는 용역보수를 의미한다.
3. ‘연장보수’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용역제공에 대하여 기본용역보수의 150%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용역보수를 의미한다.
4. ‘야간보수’는 22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용역제공에 대하여 기본용역보수의 50%를 가산 적용하여 지급하는 용역보수를 의미한다.
5. ‘휴일보수’는 휴무일에 이루어지는 용역제공에 대하여 기본용역보수의 150%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용역보수를 의미한다.
6. ‘휴가보수’는 휴가미사용에 같음하여 지급하는 부가적인 용역보수를 의미한다.
7. ‘퇴직보수’는 1년 이상 강의용역계약관계를 이행한 후 계약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한 경우에 지급되는 용역보수를 의미한다.
8. ‘영업비밀’은 학원 수강생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강의자료 및 강의내용, 강의로 구성항목 및 산정방법, 학원 강사들의 인적사항을 의미한다. ‘영업비밀’은 강의용역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갑”이 지정한 영업비밀 관리자의 승낙을 득하여야 하며, 영업비밀을 지득한 자는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9. ‘경업금지의 대가’는 “을”이 제12조 제3항에 따라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갑”이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제3조[역할]

“갑”은 “을”이 강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강의 장소(교실과 사무실) 제공, 수강생 이송 편의를 위한 차량제공 및 기타 운영비 일체(시설유지보수, 청소, 소모품, 공과금, 냉난

0/5

2020. 4. 11
1765

증
제
5
호
증

방, 시설 재투자)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고, “을”은 “갑”이 제공하는 수강생에게 독립된 지위에서 양질의 강의를 제공한다.

제4조[계약의 이행]

1. “갑”은 “을”이 강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강의내용, 방법, 과정 등 강의와 관련된 일체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한다.
2.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강의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5 . 08 . 12.부터 2026 . 08 . 11 .까지로 한다.
2. 위 1항에 의한 계약기간 만료 시 쌍방 합의로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할 경우 “갑”과 “을”간의 본 계약관계는 자동 종료된다.
3. 본 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을 평가기간으로 하며, “갑”은 평가기간 중 “을”이 강의용역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을”은 그 해지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제6조[강의시간 등]

1. “을”은 “갑”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수준 높은 강의를 수행하되, 수강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갑”과 “을”의 발전 및 본 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용역제공시간을 조정하여 강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2. “을”은 주 40시간 이내의 강의와 주 평균 5시간 이내의 부수적인 추가용역을 제공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되, 효율적인 원생관리 기타 제반 교육여건(시험기간,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약정한다.

구 분	용역 제공시간	휴게시간	기타 사항
평 일	13:30~22:30	1시간 이상	1.시험기간, 방학기간 등 교육환경 변경 시 사전협의를 통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토요일	10:00~16:00	0.5시간 이상	2.식사시간 및 기타강의 준비, 쉬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취급하기로 한다.

3. “을”은 일요일을 포함하여 주 1일 이상의 정기휴무와 연간 1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갑”과 일정협의를 거쳐 사용하기로 하며, 시험대비나 수강생의 요청 등에 따라 휴강일 강의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을”의 책임으로 강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7조[강의 용역료 및 경업금지의 대가]

1. “갑”은 “을”에게 2항과 7항을 합한 금액

일금 사백만원(W4,000,000) 을 지급한다.

2. “갑”은 “을”에게 강의용역료로 일금 삼백칠십만원을 지급한다.

3. 제2항에 의하여 “을”에게 배분된 강의용역료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것으로 한다.

구성항목	구성비	기 타 사 항
기본보수	59.3%	기본보수는 강의료 책정의 기본단위 개념으로 강의 및 강의에 부수되는 강의활동 시간을 주40시간으로 예정한 비율로 책정하며, 연장보수와 야간보수는 각각 1주 평균 12시간 범위내 에서, 휴일보수는 월평균 17시간 이상 분을 예정하여 각각 기본보수를 기준으로 가산 또는 할증하여 수입금배분금에 반영하며, 휴가보수는 통상적으로 1년간 15일분으로 책정하여 반영한 것으로 합의한다. 휴가사용 시 사용일수에 상응하는 휴가보수를 공제할 수 있다.
연장보수	22.4%	
야간보수	7.9%	
휴일보수	7.6%	
휴가보수	2.8%	

4. 정액보수는 매월 초일에 기산하여 말일에 마감하고 익월 1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5. 제2항에 의한 강의용역료 외에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하여 특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가적인 특약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6. 제2항, 제5항, 제8항에 의한 강의료, 제7항 경업금지의 대가, 제8조 1항의 퇴직보수에 대한 개인사업소득세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을”의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7. “갑”은 “을”에게 제12조 제3항에 따른 경업금지의 대가로

일금 삼십만원을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확인자: 변항희 (서명)

제8조[퇴직보수]

1. “갑”은 “을”이 1년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 후 계약관계 종료 시 퇴직보수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乙은 계약관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9조[계약의 해지]

1.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갑”과 “을”이 계약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갑”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1개월 인수인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갑”은 “을”에게 위약별로 일금 10,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담당하던 수강생과 업무를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성실하게 인계하여야 한다.

3. 계약 해지와 동시에 “갑”이 제공한 자산 및 “을”이 필요에 따라 만든 강의자료 등은 “갑”에게 귀속된다.(수강생, 경영권, 교구, 강의자료 등)

제10조[계약의 즉시 해지]

1.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1-1. 학원생을 상대로 개인 과외를 한 경우
- 1-2. 학원생과의 교제 또는 음주 등의 행위를 하여 "갑"의 신뢰를 실추시킨 경우
- 1-3. 원생에게 부적절한 언행, 문단결강 등으로 강사로서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1-4. 강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강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5. "갑"의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등의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 1-6. 음주상태로 강의하거나, 강의시간 중 음주를 하는 경우
- 1-7. 학원생, 동료에게 "갑"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 1-8. "갑"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9. 학원의 경영상 어려움(수강생 감소 등)으로 인해 담당 강의를 폐강되는 경우
- 1-10. "을"의 근무 조건을 동료 강사나 직원에게 말할 경우
- 1-11.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종하거나 업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 1-12. 기타 이와 동등시 되는 사유로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즉시 해지되는 경우에도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11조[손해배상]

1. 사전 통보 없이 일방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은 계약 해지에 따라 담당업무 및 수강생을 성실히 인수인계하지 않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특약사항]

1. "을"은 "갑"과의 계약기간 중은 물론 용역 계약 종료 후에도 "갑"의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을"이 제1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한다.
3. "을"은 본 계약의 해지 후 2년 이내에 "갑"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반경 3km 내에서 ,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갑"과 동종의 영업(학원 및 개인교습소 설치 및 운영)을 하거나 "갑"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반경 3km에서 동종의营业을 하는 학원 및 개인교습소에 취업하여 강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본 계약 기간 중 "갑"의 사업장에 재원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을"은 본 계약의 중 또는 해지 후 2년 이내에 당시 "갑"의 사업장에 재원중인 학생들에게 다른 학원 및 강의의 소개나 알선 또는 개인교습(과외 포함)을 할 목적으로 연락(전화, 이메일 등)하거나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 메신저 어플 포함)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5. 본 특약사항 중 제1, 2, 4항을 위반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별로 일금이천만원(20,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하고, 위약별 외에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도 배상하기로 한다.
6. 위 특약사항 중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을"은 제7조 제7항에 따라 "갑"으로부터 수령한 경업금지의 대가를 전액 반환하기로 한다.

7.

제13조 (수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1. 수업시간 준수 및 수업준비 철저: “을”은 수업시간을 준수하고, 수업준비를 철저히 한다.
2. “을”은 수업 중 강의실을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을”은 신체적으로 특별히 불편한 증세가 없는 한 수업은 서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을”은 학부모 개별상담은 매달 1회 이상 또는 필요시 하여야 한다.
5. 담임활동: “을”은 담당하는 학생은 전화 혹은 면담을 통해 성적 등에 관한 학생 관리를 수행한다.
6. 회의: “을”은 학원에서 실시하는 회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 위의 업무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급여 인상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1. 본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 하도록 한다.
2. “을”은 본 근로계약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품 등에 관하여 추가 청구를 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제15조[전속관할의 합의] 본 계약에 대하여, 또는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는 '갑'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을”은 근로계약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본 계약을 원만히 체결하였음을 확인함.

2025 . 08 . 12 .

“갑”	“을”
키인수학전문학원 대표 이 예 림 <i>이예림</i> 서울시 성북구 정릉로 330, 4,5층 02-912-0503	성명: <i>변항희</i> 주민등록번호: <i>820818-2471213</i> 주소: <i>25111 외계로 45길 94</i> 연락처: <i>010-7121-4109</i> 이메일: <i>SP18 81 @ naver.com</i>

0176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안내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사진, 생년월일, 전화번호(집, 휴대폰), 주소, 이메일, 보훈대상여부, 병역사항, 장애여부, 가족관계, 학력사항, 경력사항, 해외경험, 사회경험, 수상내역, 자격현황, 종교 2.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직원(강사) 인사업무(평가, 근태, 급여, 연말정산, 복리후생, 인사발령, 교육), 타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소득세법 등) 법령준수, 학원 행정업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귀하와 관련된 학원 행정업무(급여, 평가, 계약, 발령, 복지후생, 출장 등)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정보를 제공받는 자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불특정 사용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강사)의 정보를 통한 직원(강사)의 신상정보 파악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진, 이름(한글, 영문), 이메일, 소속, 전화번호, 담당업무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 기간 재적변경 또는 인사이동 등과 같이 직원(강사)의 정보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시 직원(강사)의 정보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법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17조(개인정보의 제공)

2026. 4. 11

01765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필수)

본인은 직원(강사) 인사업무 및 타법 법령준수 등 학원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본인 개인정보를 학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필수)

학원관리 시스템의 개인정보(이름, 이메일, 담당업무, 사무실 개인 전화번호) 공개에 대한 동의

(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2018 년 1 월 4 일

동의자 확인 : 성명 김향희 (인 또는 서명)